

수원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나82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1.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천

담당변호사 남다영, 이은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찬

2.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E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이보라, 변진환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2. 15.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1937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E의 피고 B,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다. 원고 A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원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E과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E이,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D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20.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와 원고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E(이하 ‘원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에 관하여 2019. 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위 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하라. 피고 D과 원고 소송수계인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에 관하여 2019. 1.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위 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를 인도하라.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에 관하여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이 법원에서 피고 B,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 중 “2017. 1. 7.”을 “2019. 1. 7.”로 고친다.

2. 원고 A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로부터 피고 B는 J 헬스장의 영업을, 피고 D은 K 헬스장의 영업을 각 양수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양도인인 E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E의 원고에 대한 2015. 1. 27.자 차용금 채무는 E이 자신이 운영하던 위 각 헬스장을 포함한 여러 헬스장의 영업 및 헬스기구 구입을 위하여 차용한 채무(즉, 포괄적인 I 영업을 위한 채무)이므로 이는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E이 원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1억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를 공동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피고 B는 J 헬스장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 D은 K 헬스장의 영업을 양수한 후 종전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는 H 헬스장이 위치한 용인시 처인구 H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자로, 2014. 12. 16. E에게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1. 30.부터 2018. 1. 30.까지 임대하였고, 그 무렵인 2015. 1. 27.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피고 B가 영업양수한 J 헬스장은 2013. 4.경 영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D이 영업양수한 K 헬스장은 2018. 10.경 영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A가 E에게 대여한 시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A의 E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각 양도의 대상이 된 J 헬스장, K 헬스장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E의 아내로, 2017. 7.경부터 L헬스장에 대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L헬스장을 실제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는 E이다. 그런데 현재 E이 무자력이어서 이 사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L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가 E의 소유임을 확인받아 추후 이를 강제집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L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가 E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확인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L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가 E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 A는 E이 무자력이라면 E을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L헬스장 내의 운동기구 및 집기 일체의 인도 청구의 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E이 무자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 A는 E에 대하여 금전 채권자이므로 E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바, 원고 A가 그 법률관계를 이 사건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4.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B,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되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2019개회175191호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20. 6.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 A의 이 사건 채권 중 1억 원의 채권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 이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B와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소송수계인의 피고 B,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규, 판사 신미진, 판사 박미영

(별지)

목 록

1. 용인시 처인구 , 지하층 헬스장
2. 용인시 처인구 , 5층 헬스장
3. 용인시 기흥구 , 5층 헬스장

